시보

선	기관의 장
람	

all ways INCHEON

제2071호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인전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25	호 인전광역시 8	행성기구 설지	소례 일무개성소례안	입법예고	2

○ 인전광역시입법예고 세2022-126호 인전광역시 공무원 성원 소례 일무개성소례안 입법예고		8
---	--	---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홍보담당관실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2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 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2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서비스의 현장대응력 확보를 위한 소방본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신설 관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고, 소재지 변경이 필요한 소 방관서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서 신설에 따라 소방서의 명칭 · 위치 ·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미정

비 된 일부 소방서의 위치를 정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 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 동구·옹진군(북도면, 영흥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가 좌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청라동, 원창동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미추홀 소방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505(삼성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68(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영흥면
인천검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1-3	인천광역시 서구 : 마전동, 당하동, 백석동, 왕 길동, 금곡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 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 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 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 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 는 경우
-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5조(설치 등) ① 시·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단 및 담당 관을 둔다.
 - ③ 소방서의 과·단·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2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서비스의 현장대응력 확보를 위한 관서 신설 등 소방본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 (안 별표 2)

- 소방령 : 3%이내 → 3.5%이내(0.5% 증)

- 소방위 : 11%이내 → 12%이내(1% 증)
- 소방사 : 30%이상 → 28.5%이상(1.5% 감)
- 나.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소방직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 · 소방정 정원 : 20명 → 21명(1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385명 → 3,384명(1명 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6% 이내	37% 이내	4%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	구직	지도직		
1 E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5% 이내	8% 이내	12%이내	16% 이내	31% 이내	28.5%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 상 당	6급 상 당	7급 상당 이하
비율	51% 이내	18% 이내	18% 이내	13% 이상

※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530						
정무직 계	3		·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77						
1급	1				1		
2급	1				1		
2 · 3급	3	2	1				
3급	20	12		1	4	3	
3 · 4급	2	2					
4급	159	98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84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8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5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1	8		13			
소방령 이하 소계	3,384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 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 ⑤ (생 략)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 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삭 제)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

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1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③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④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